

과학벨트 거점지구(둔곡) 산업용지 처분공고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 “산업집적법”)」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(둔곡) 산업용지의 매수자 선정을 위한 처분공고를 실시합니다.

2023년 10월 10일(화)
(재)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

1. 처분용지 현황

- 가. 주 소 : 대전시 유성구 구룡동 823-2 [둔곡 산업 1010-2]
- 나. 소유자 : (주)나노프로텍 (대표이사 김진용)
- 다. 부지면적 : 10,630.4 m²
- 라. 건축면적 : 나대지 상태임.

2. 처분사항

- 가. 처분가격 : 5,162,972,000원(₩오십일억육천이백구십칠만이천원)
- 나. 대금지불조건 : 일시납 (* 처분신청자와 협의 조정 가능(관리기관확인))
- 다. 처분관련 유의사항
 - 매수자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임의 처분을 제한받게 됨
 - 본 처분 건 관련, 부지현장 및 은행 등과의 금전 및 소유권 관계, 기타 잠재적 위험은 매수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

3. 매수시기

- 선정 이후, 처분신청자와 관리기관간 입주승인 신청 및 승인 (과기정통부장관) 절차 이행 후 매수계약 체결

4. 매수자격

- 가.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·육성계획(과기정통부고시 제 2018-49호, 2018.8.2.) 별지 1, 11대 유치업종에 부합한 입주업종

나. 상기 업종 중 입주제한 해당업종

- 입주제한 업종 : 입주가능 업종 외의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
- '수질환경보전법', '대기환경보전법', '소음·진동규제법', '악취방지법'의 규정에 의한 악취 및 특정유해물질 발생업종(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.)

다.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(신동,둔곡)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(12차)

승인 고시(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-266호, 2022.12.07) 내 둔곡지구 산업용지 허용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을 지으려는 자

5. 공고기간

가. 공고일 : '23.10.10(화) ~ '23.10.26(목) 14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나. 제출서류 : 사업계획서(토지매입용) 1부, 법인등기부등본·법인인감증명서·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, 최근년도 재무제표, 기업신용등급 평가서, 건축도면(개요, 배치도, 층별평면도 등 *그림파일 또는 PDF파일), 기타서류 : 해당기업 한함(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, 벤처기업등록증, 연구개발 우수성 공증할 수 있는 자료(특허, 실용신안, 기술등급 평가서 등), 연구개발비 3%이상 증빙서류*(세무조정계산서 및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3호서식, 회계법인 손익계산서 사본), 회사소개서(리플렛, 브로슈어 등), 자금조달방안(토지매입 및 건축비), 거점지구 발전 기여방안

* 세무조정계산서 내 연구개발비와 동일 원본대조필 날인(세무사/회계사)

다. 제출방법 : 이메일(science1@innopolis.or.kr) 제출 및 접수

* 접수 여부 전화확인 필수

6. 설명회

가. 일시 : 2023.10.16.(월) 10:00~12:00

나. 장소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층 컨퍼런스홀

*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로 123번길 27-3, 대중교통 이용권고(주차장 협소)

다. 주요내용 : 처분공고지 위치 및 매수절차 안내 등

* 질의응답 예정으로 일정 연장(변경) 가능

7. 선정방법

가. 선정일 : 2023.11.14.(화) 10:00~14:00

* 경합기업 개수에 따라, 심의 일정 연장(변경) 가능

나. 선정방법 : 추첨 후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의 선정

* 비경합(1개 기업 접수)일 경우, 입주적격성 여부 서류 검토 후 입주승인 절차 이행

구 분	공급일정	장 소
입주심사	'23.10.27.(금)~11.9(목)	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추첨(경합시)	'23.11.10.(금)	(현장추첨) 대덕TBC 콜라보홀(1층)
입주승인	'23.11.13(월)~12.8(금)	연구개발특구재단 및 입주관리서비스 공지사항 게시

* 경합기업 개수에 따라, 심의 일정 연장(변경) 가능

다. 입주심사 : 거점지구내 우수기업(기관)을 유치하기 위하여 거점지구 목적 부합성, 향후 기여도, 건축·사업 추진 능력 등을 종합적·객관적 평가

○ 평가자 :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심사 평가위원회

○ 평가내용 : 입주승인 기본사항평가 및 사업계획평가

○ 평가방법 : 100점 만점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정성·정량 평가로 나누어 평가

-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 득점 기업은 입주를 제한하고, 기업이 경쟁시에는 7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대상자 순번추첨

라. 입주승인 : 위 '다'의 입주심사 결과 우선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 재단의 입주승인 사전 검토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입주승인

※ 입주심사 평가기준 : [참고3] 참조

8. 매수 자격상실

가.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
나. 선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

다.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법인(또는 기업체)으로 신청한 경우

9. 처분제한 및 준수사항

- 가. 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관리기관은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.(“산집법” 제41조)
- 나. 매수자는 분양계약 권리의무승계계약(이하 “분양승계계약”이라 함) 이후 2년 이내 공사 착공을 하여 4년 이내 완공하여야 한다. (공사 착공은 착공신고 시점을, 완공 시점은 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 사용승인일을 말함)
- 다.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(변경)사항 및 환경·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(변경)사항 또는 인·허가(변경)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“산집법”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, 공해관리, 환경관리 등 신청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관리기관(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)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, 신청자는 동지시를 준수하여야 함.

10. 기타

- 가. 제출서류 반환 불가
- 나.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의 매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(등기), 우리 재단과는 입주승인 절차이행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
- 다.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매수자(입주 대상자)를 심의·선정하는 관리기관이며, 대금 및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 간 처리하여야 함
- 라. 매수자는 공고된 토지현황, 압류여부, 업종, 환경 인·허가 여부, 처분제한 및 기타 법률 준수 등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에 대한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률적·행정적·민사적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
- 마.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 간 협의(계약) 과정 중 발생하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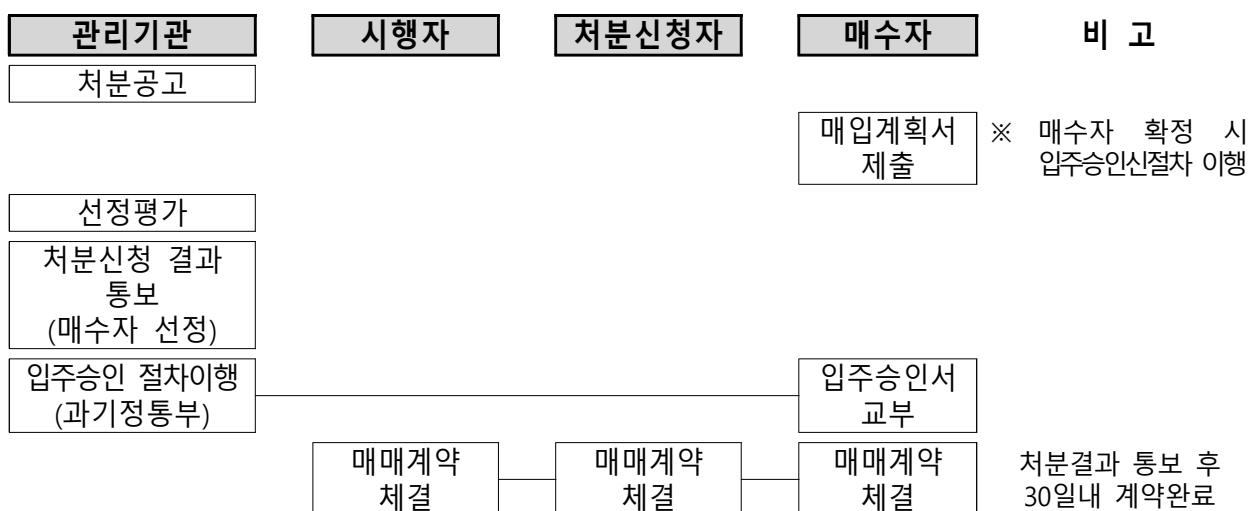
행정적·법률적·민사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(계약) 주체에 있음

- 바.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용지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
- 사.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, 처분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
 - * 입주기업체(처분신청자)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양도가격은 산출된 가격 이하로 결정할 수 있음(산집법 제39조제5항)
- 아. 최종 매수자로 선정 된 자는 과학밸트법 제12조의 4(입주의 승인 등)에 의거한 입주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함.
- 자. 매수인은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거점지구는 개발계획, 실시계획, 에너지사용계획,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(환경영향평가, 교통영향 평가 등), 인허가 승인조건 사항 등과 향후 인허가 변경사항 및 관련 법규, 조례,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서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더 강화된 것을 따라야 합니다. (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법규, 조례, 규정, 지침 등은 변경(개정) 될 수 있으며, 매수인은 항상 최신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)
 - * 공고일 이후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·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름
- 차. 본 주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단지 관리지침」,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거점지구 개발계획·실시계획·지구단위계획 및 토지분양 계약서 등에 따름
- 카.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승인을 완료하였더라도 입주업종이 당초 신청한 업종이 아니라는 관리기관의 판정이 있을 경우 입주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입주업종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야 함

타. 본 처분 토지의 최초 분양 가격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거 조성사업 완료 전 추정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필지별 차등 분양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, 전체 사업 준공 후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필지별 차등 분양가격을 적용하여 확정한 가격에 의거 정산을 실시함

파. 토지사용시 유의사항은 [참고4] 내용에 따름

10. 주요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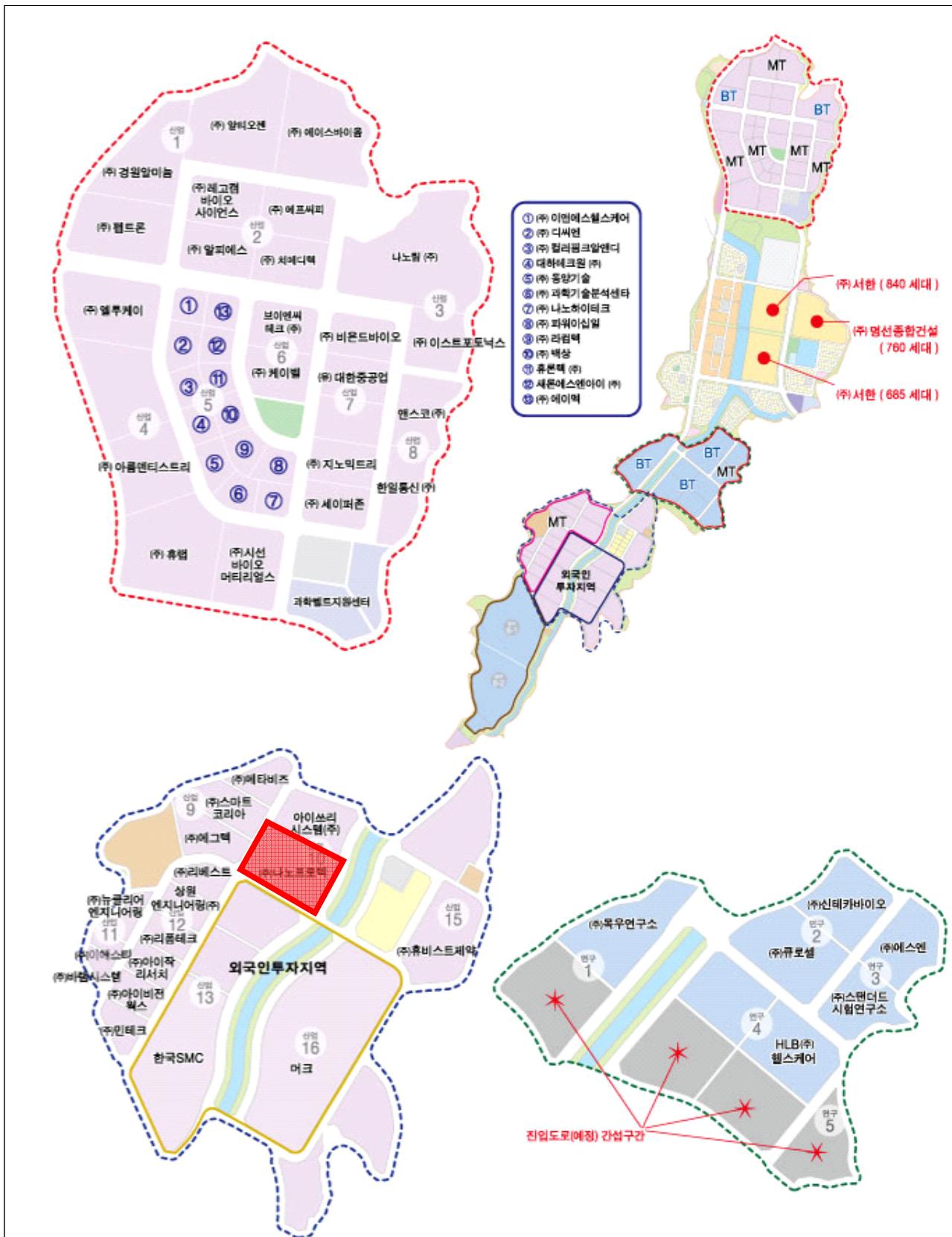


11. 연락처

구 분	담당자	주 소 및 연락처
관리 기관	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기획실 담당 -입주업종·매입계획서 작성 등	·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-5 ·042-865-8951
처분 신청자	(주)나노프로텍 -대금지불, 계약, 토지·건축물 현황, 압류여부 등	·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7(탑립동, (주)나노프로텍) ·042-936-5110, 070-4310-9034

참고 1

과학밸트 거점지구(둔곡) 산업용지 처분필지 위치도



참고 2**거점지구 유치 업종별 산업분류****■ 통계청고시 제2017-131호**

업 종 (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)		세부 분류 업종 (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)
①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(C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(C201),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(C202), 비료,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(C203),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(C204), 화학섬유 제조업(C205)
②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(C2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(C211), 의약품 제조업(C212),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(C213)
③	금속가공제품(C2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구조용 금속제품,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(C251),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(C252),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(C259)
④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(C26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반도체 제조업(C261), 전자부품 제조업(C262), 컴퓨터 제조업(C263), 통신 · 방송장비 제조업(C264), 영상·음향기기 제조업(C265), 마그네틱·광학 매체 제조업(C266)
⑤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(C2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의료용 기기 제조업(C271), 측정, 시험, 항해,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(C272),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(C273),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(C274)
⑥	전기장비(C28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동기 · 발전기 및 전기변환 · 공급 · 제어장치 제조업(C281), 전지 제조업(C282), 케이블 제조업(C284), 조명장치 제조업(C284),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(C289)
⑦	기타 기계 및 장비(C29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(C291),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(C292),
⑧	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M70~7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구개발업(M70), 전문서비스업(M71),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M72),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M73)
⑨	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J58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J5821), 시스템 ·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5822)
⑩	컴퓨터 프로그래밍 ·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(J6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(J6201),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, 구축 및 관리업(J6202),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(J6209)
⑪	정보서비스업(J6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료처리, 호스팅,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(J631), 기타 정보 서비스업(J639)

참고 3

입주심사 평가기준

평가대상	평가요소	평가항목	배점	비고
입주승인 기본사항 평가	우선유치대상(15)	유치업종 해당여부	15	정량
	재무건전성(10)	기업 신용등급	10	정량
	건축계획(10)	착공·준공시기 및 부지 활용방안, 정원대비 건축규모	5	정성
		부지 및 건축비 조달방안	5	정성
사업계획 평가	사업수행평가(50)	사업 계획의 적정성	10	정성
		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	15	정량
		최근 연구개발 실적 및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	15	정량
		기술등급 평가	10	정량
	거점지구 향후 기여도(15)	거점지구 발전 기여도	15	정성
합 계			100	

건축공사 계획 시 준수사항

- ① 부지매매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
* 계약당시 유의사항에 언급된 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에 따른 토지의 조성상태, 토지이용 장애사항 및 사업지구내외 현장여건 등 유의사항을 감안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여야 함.
- ② 공사용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세부사항 및 우, 오수 관로, 상수도 분기관 등 기반 시설 연결부 설계 시 **현장 여건을 필히 확인하고** 과학벨트 사업단 둔곡지구 현장사무소 감독원(042-716-2071,2072)과 협의하여야 합니다.
- ③ 토지의 조성상태, 현황(형상, 고저, 암반, 법면상태, 석축 및 옹벽발생여부, 공사계획평면도등) 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(주변상황) 및 토질상태(단, 암반분포 및 연약지반 현황등은 사업지구내 대표지점에 대한 토질시험 결과에 의한 추정치임으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)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.
- ④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(건폐율, 용적률, 높이 등)은 최고 한도이므로 실제 건축 가능한 증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, 토지사용 장애사항은 현장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,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.
- ⑤ 우수.오수.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에 따라 설치.연결하여야 하고, 단지 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(배할선)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, 토지사용 중 도로, 상하수도, 경계석,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.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.
- ⑥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분양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한 후 건축 설계를 하여야 하며, 전력.통신.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자가 직접 각 시설 설치기관과 인입방법,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.
- ⑦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사토, 건축폐기물은 분양 받은 자가 처리해야 하며, 향후 교통 영향분석.개선대책에 따라 도로변 훈스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.
- ⑧ 매수인은 지구단위계획(주차장 확보 및 건축한계선, 기타 세부적인 건축 및 경관부분 등)을 확인하여야 하며, 공급금액은 토지형상, 옹벽, 토질상태, 법면상태 등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⑨ 계약체결전 도로와 부지 단차발생 및 부지주변 사면 발생현황, 연약지반 및 암반 발생 현황을 공사계획평면도 및 토지이용장애사항 설명서 등을 필히 확인하고 매매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.
- ⑩ 조성공사 여건상 향후 필지 주변에 **가로수, 가로등, 표지판, 소화전, 보도펜스** 등 기타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, 필지 조성고 등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확인하여 설계(진출입로, 출입문 등)에 반영하여야 합니다.
- ⑪ 향후 관계법령 및 해당 시.군 조례에 의거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(시행자)에서 부담한 경우 외에는 매수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
- ⑫ 매수인은 교통영향평가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된 '차량진·출입 허용구간'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·감속차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.
- ⑬ 도시가스 공급은 가스공급 사업자계획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므로, 개별 사업자에게 확인하여 공급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.

- ⑯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는 자중화 구역으로, 전기 인입 설치공사(임시 전력 포함) 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.
- ⑰ 가시설 설계 시 도로침하 및 관로파손 방지대책 수립하고, 공사착공 시 과학벨트 사업단 둔곡지구 현장 사무소와 협의하여야 하며, 공사로 인해 도로침하 및 관로판손 등 공공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매수자의 비용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.
- ⑱ 각종 공공시설물(가로등, 보안등, 횡단보도·육교, 전기공급시설, 정압기, 소화전등)의 위치는 사전 파악하여 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며,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⑲ 건물 신축 시 매수자의 비용부담으로 경계측량 후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합니다.

공사 시행시 준수사항

- ① 공사 착공시 공사용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하여 LH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.
- ② 우.오수 및 상수관 등 단지내 기반시설 연결시 LH 설계도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, 변경 사항 발생시 LH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. (우.오수 및 상수 등 인입관이 기 설치되어 있으며, 파손 등 문제발생시 직접 원상복구 조치)
- ③ 개발행위 시 발생되는 잔토는 인접토지에 적치하지 않아야 하며 자체 사토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, 외부 사토 시에는 작업차량으로 인한 주변도로 토사퇴적 및 비산 먼지 발생 억제대책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합니다.
- ④ 지하층 시공 시 인접필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인접필지를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⑤ 건축공사 지하터파기시 인접도로에 매설된 관로의 침하 및 변형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- ⑥ 공사 중 기반시설물(도로, 우수, 오수, 상수, 경계석, 가로수, 가로등, 보안등, 교통안경시설 등)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.
- ⑦ 공사시 발생하는 우.오수, 각종 폐기물 등의 처리와 전력, 가스, 통신 등 기반시설 인입 및 사용 비용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.
- ⑧ 공원, 녹지, 보행자도로 및 공공공지 등에는 수목 식재, 마운딩 및 화단 등이 조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조성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 및 설치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⑨ 인접한 보도, 공공공지 및 공원녹지 등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므로, 공사용 자재 적치 등으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, 보행자 안전이 각별히 관리되어야 합니다. (공사중 기반시설 훼손시 원상복구 필요)
- ⑩ 부지사용 및 공사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·안전·환경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.
- ⑪ 건축 지하 터파기로 인해 인접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면 주변지반이 침하되어 인접한 건축물 및 도로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수위가 높은 부지는 차수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.
- ⑫ 건물 신축시 매수자의 비용부담으로 경계측량 후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합니다.

공사 준공시 준수사항

- ①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「도시기반시설 원상복구 확인서」가 필히 첨부되어야 합니다.
- ② 기반시설 원상복구 확인서 발급 신청시 관로(오수, 우수 등) 오접 여부 및 관로 토사 퇴적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하여 관로가 노출된 관로별 연결사진, 내부사진 및 CCTV 촬영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③ 도로, 공원, 상하수도 등 공급처리시설 준공전(건축물 사용승인)에 발생하는 건축공사 중 발생된 우.오수, 폐기물 등의 처리와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전력, 가스, 통신 등 인입 관련 시설은 건축주 부담으로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.

현장관리 및 기타 사항

- ① 공사시행 중 발생하는 민원은 건축시행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.
- ② 건축공사 시행 중 공공사업과 간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이 우선하여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.
- ③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관련법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④ 도로구간의 굴착복구(표층보강)는 당일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, 당일 복구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가복구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, 포장층 표준 단면도에 의거 1차 복구 완료 후, 2개월 이내 2차 복구(1개차선 전폭이상 절삭후 재포장 및 차선재도색)를 시행 하여야 합니다.
- ⑤ 상기 협의의견 이외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계획에 반하여 간섭사항이 발생할 시 반드시 LH와 협의하여야 합니다.
- ⑥ 도로, 공원, 상·하수도, 전기, 통신, 가스의 공사 완공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계 인수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고, 기타 공급시설(전기,통신,가스 등)은 별도 공급주체(한전, KT, CNCITY 등)에서 공급하므로 매수자가 해당공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, 설치 완료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.
※ 도시가스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매수자에게 추가 부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건축 준공 시 위 사항을 감안해야 함

※ 개발계획(변경)승인서, 실시계획(변경)승인서, 공사계획평면도, 지구단위계획, 각종 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자료는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토지판매부 및 대덕과학밸트사업단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, 분양 및 공사계획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문 의 처			
LH 대전충남지역본부 (사업시행자)	용지매입 및 매매계약 관련	토지판매부  (042)470-0163	대전시 서구 둔산종로 108길
	개발계획, 실시계획 등 인허가 및 조성 관련	대덕과학밸트 사업단  (042)820-7742	대전시 유성구 둔곡동 131번지
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	입주심사 및 입주승인 체결 관련	과학밸트기획실  (042)865-8951	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-5